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박성연 의원 외 22명
- 나. 의안번호: 제741호
- 다. 발의일자: 2023. 5. 23.
- 라. 회부일자: 2023. 6. 5.

2. 제 안 사 유

- 최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는 공회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륜차는 배출가스의 총량은 적으나 배출가스 중 탄소와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회전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단서 삭제).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많지는 않지만, 연료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은 이륜차를 공회전 제한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제정('03.7.15)하여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조제1항에서 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어, 현재 이륜차는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에는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를 제외했지만, 2012년 개정으로 이륜차를 제한대상에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반면, 서울시는 2003년에 현행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시 상위법에 따라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이륜차를 제외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상위법 개정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공회전 제한대상을 일치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음.

다만, 이륜차 공회전 단속 시행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일선 부서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례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소관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인바, 향후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개 단체(제주, 울산, 전남, 세종)만이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소관부서는 향후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륜차 공회전제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